

疫學調査의 意義와 調査方法 —記錄方法(二)

—1971年「口腔疾患 및 그 狀態에 對한 疫學調査」에 際하여—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豫防醫學敎室

李 正 祐

4.3.10 齒牙齶蝕症

本症診斷基準說明에 앞서 調査方法說明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調査欄은 別表와 같이 모든 1:中切齒, 2:側切齒 3:犬齒, 4:第一小白齒, 5:第二小白齒, 6:第一大白齒, 7:第二大白齒, 8:第三大白齒의 順이고 10代는 上顎右側齒牙群 20代는 上顎左側齒牙群, 30代는 下顎左側齒牙群, 40代는 下顎右側齒牙群으로 各永久齒의 番號를 定하고 乳齒에 對해서도 같은 要領으로 51—55, 61—65, 71—75, 81—85로 定하여 놓았다. 即 50을 넘는 數는 乳齒, 그 未滿는 永久齒이고 十代數를 보던 上下顎別, 左右側別을 알수있게 되었다. 例를 들면 #11이던 上顎右側中切齒, #36이던 下顎左側第一大白齒가 되며 #63이던 上顎左側乳犬齒이고 #85던 下顎右側第二乳白齒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調査에 앞서 이번에 새로 생긴 알아줘야 할 數字가 있으니 이것은 診斷基準을 說明과 함께 說明하고자 한다. 이 診斷基準으로 該當되는 數字(略號: numerical code)를 該當 齒牙欄에 記入하면 되는 것이다.

略號 診斷基準

- “O” 殘根(Roots): 齒冠部가 完全히 破壞된 그 齒根만 남아있는 境遇를 말한다.
- “X” 未萌出齒(Unerupted): 萌出될 것으로 期待되는 齒牙로서 아직 萌出되지 않은 齒牙와 이미 拔去해버린 境遇와 混同해서는 안된다.
- “1” 拔去齒(Extracted): 齒牙齶蝕症으로 因하여 이미 拔去한 缺損齒(missing tooth).
- “2” 先天的 缺損齒(Congenital missing): 結果는 같은 缺損齒라도 1과 區別하기 爲해 先天的으로

缺損한 境遇를 따로 記錄한다.

“3” 健康齒(Sound): 齶蝕症 또는 그에 對한 疑心도 가질수 없으며 治療받은 經驗도 없고 珐瑯質形成不全도 없는 健康한 齒牙.

“4” 齶蝕症(Decayed): 齶蝕이라 함은 어떤 實質缺損이 探針으로 窩洞內에 確實한 軟化床이나 遊離珐瑯質 또는 軟화된 窩洞壁이 現存하는 것을 말한다. 10)12)13)

이 齶蝕의 診斷에 疑心나는 境遇는 齶蝕이라고 診斷하여서는 안된다(이때는 略號 “7”이 된다) 臨床的齶蝕은 齶蝕이 되는 過程中의 一段階임을 銘心하여야 한다. 10)

그러나 한 齒牙의 一面 또는 二面以上이 充填되고 다른 一面이 齶蝕되었거나, 또는 充填된 周圍에 二次的齶蝕이 있을 境遇, 또는 將次 繼續治療를 要하는 一時的充填(金屬, 合成樹脂, 珐酸시멘트 以外的 材料로 臨時充填)된 齒牙는 齶蝕으로 記錄한다. 8)9)10)12)13)

註: 크누트슨敎授는 一旦 治療를 받은 歷史가 있는 모든 齒牙는 어떠한 境遇라도 充填齒로 看做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 理由는 齒科診療의 質의 問題까지 言及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點 現在 論雜中임을 附記해 둡니다.)

“5” 充填齒(Filled): 어떠한 永久的인 材料(金 아말감 같은 金屬, 合成樹脂, 陶材, 珐酸시멘트 등)로서 充填되었고 또한 二次的齶蝕이 없어야 한다. 二次的齶蝕이 있거나 充填받은 他齒面에 齶蝕이 있을 境遇는 다시 治療를 받아야 할것으로 充填齒로 計算하여서는 안된다(4項 參照).

“6” 珐瑯質形成不全(Hypoplastic): 齒牙發育期의

珪瑯質形成의 不全으로 因한 齒牙表面이 희거나 白墨같은 斑點 또는 汚粗한 小窩 등을 말한다.

“7” 小窩 또는 裂溝(Pits or Fissures): 探針의 끝에는 걸리지만 明白히 軟化된 窩洞底나 遊離珪瑯質 또는 壁의 軟化라고 看做할 수 없는 小窩나 裂溝는 이 範疇에 屬한다.

“8” 保留 齲蝕(Arrest caries): 새로 制定된 것으로 前項 “7”과 같이 齲蝕으로 診斷할 수는 없으나 充分히 齲蝕이 始作되 있는 狀態를 말한다. 例를 들면 隣接面의 齲蝕으로 探針으로 軟化된 象牙質의 存在를 確認할 수 없는 境遇가 이 範疇에 屬한다.

“9” 拔去를 要하는 齲蝕齒(Caries into pulp): 齲蝕이 齒髓에 까지 進行되어 正常的으로 回復시킬 수 없는 齒牙를 말한다. 此項은 臨床的 判斷에 關한 問題로서 各國의 齒科界의 現況에 따라 다르다. 齒髓切斷術을 爲始한 各種 齒髓治療로 保存되기도 하고 같은 境遇(case)라도 拔去해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原則的으로 要拔去齒로 看做한다. 또 殘根만 남아 있고 그자리(space)가 있는 境遇도 要拔去齒로 計算한다. 但, 乳齒에서는 이에 代替될 永久齒가 없을 때에 限한다.

<記錄方法>

a) df齒牙: 乳齒中 齲蝕이나 充填된 齒牙의 有無를 該當欄에 表示한다. 即 齲蝕의 經驗이 一個齒牙라도 있으면 有(one or more)에 그 經驗이 없거나 乳齒가 하나도 없으면 無(none)에 表示한다.

「56」: 有일때는 1로, 無일때는 2라고 數字로 記入한다.

b) DMF齒牙: 永久齒에 齲蝕, 缺損 또는 充填된 齒牙의 有無를 該當欄에 表한다.

<「57」: 前項「56」과 같은 要領으로 記入한다>

c) 齲蝕症으로 말미암아 拔去해야 할 齲蝕齒牙數: 拔去해야 할 乳齒와 永久齒의 數를 各己 該當欄에 記錄한다. 齒冠의 一面 또는 그 以上の 面이 完全히 齲蝕症으로 破壞되었을 때는 拔去를 要하는 齒牙로 看做한다. 또 殘根齒도 이에 該當된다. (이 齒牙數는 α 齲蝕齒牙數에 一旦計算되었던 것 中에서 該當되는 要拔去 齒牙數만 別途로 計算하는 것이다)

齒周疾患으로 因하여 要拔去齒로 計算된 齒牙가 齲蝕症에 依해 다시 要拔去齒로 判定된 境遇에는 各己計算에 넣는다.

<乳齒, 永久齒別로 各各 그 數를 計算記錄하고 「58—59」에는 乳齒의 數를, 「60—61」에는 永久齒의 數를 그대로 記入한다.>

d) 齲蝕齒牙數: 乳齒와 永久齒中 齲蝕에 罹患된 齒牙數를 各各 計算 記入한다. 이 計算에는 齲蝕으로 말미암아 拔去해야 할 齒牙도 包含된다. 一時的充填 即 金屬屬 合成樹脂 또는 珪酸씨멘트 以外的 材料로 處置된 齒牙도 齲蝕齒로 計算한다. 一旦 保存治療받은 齒牙도 現在 齲蝕되어 있는 齒牙는 齲蝕齒로만 計算한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齒牙는 充填齒로 計算해서는 안된다.) (一時的充填 및 一旦 保存治療를 받았던 齒牙는 “4”와 “5” <4.3.10 齒牙齲蝕症 參照>에서 詳述한바와 같이 本 調査에서 만든 暫定的으로 充填齒牙 <“5”>로 看做하게 되었다.

<「62—63」乳齒의 數를는 永久齒의 數를 記入한다>

e) 缺損齒牙數: 이것은 永久齒에만 該當되며 缺損된 齒牙數를 記錄한다. 永久齒가 平均萌出時期가 經過되었는데도 萌出될 자리가 남아 있거나 萌出하려는 아무런 徵兆가 보이지 않으면 反對側(同類)의 同一齒牙를 參考한다. <「66—67」>

f) 充填齒牙數: 充填되고 또 아무런 齲蝕의 症狀이 없는 乳齒와 永久齒를 各己 計算하여 記錄한다. 金屬冠이나 繼架齒를 爲한 支台齒도 齲蝕에 對한 아무런 證據가 없다면 充填齒로 記錄한다. 一旦 充填되었더라도 蝕이 進行中이던 充填齒로는 計算하지 않고 오직 齲蝕齒로만 計算한다. (前述 d)項 및 “4” 또는 “5” 參照)

<「68—69」는 該當 乳齒의 數를, 「70—71」은 永久齒의 數를 記入한다>

끝으로 g) df와 DMF 齒牙의 合算: 乳齒의 境遇는 d와 f를 永久齒는 D, M, F를 合算한다 (但 要拔去齒牙數는 D에 包含되어있으므로 二重으로 計算하지 않도록 注意).

<「72—73」은 乳齒의 數를 「74—75」는 永久齒의 數를 그대로 記入하면 된다>

4.3.11 弗化齒(Fluorosis)

弗素含有飲料水를 常飲한 境遇에 나타나는 弗化齒에 對한 調査는 珪瑯質表面에 나타난 溝狀의 異常을 보고 五段階로 나뉘 記錄한다. 即 0: 該當없음 1: 疑心스러움, 2: 있으나 大端히 輕微함, 3: 輕微한 徵候가 認定됨, 4: 中等度의 徵候, 5: 아주 甚한 徵候로 나뉘 該當欄에 記錄한다 <「76」: 該當 略號만 記入 한다>

끝으로 診査醫의 姓名을 적고 診査日字를 確認한 다음 記錄에 錯誤有無를 調査한다.

5. 實際調査

省略(計劃 및 日程)

6. 分析 및 評價

紙面關係로 省略

結 語

本 調査의 意義는 世 論 再 論 할 것 도 없 이 앞 으로 우리 나라 口 腔 保 健 에 關 한 모든 基 本 的 資 料 로 서 의 役 割 을 堪 當 하게 될 것 이 다. 齒 科 醫 療 保 險 制 度 의 研 究 에 도 基 礎 的 資 料 가 總 括 되어 있 다 고 하 겠 다. 그 러 니 만 큼 本 調 査 는 참 으 로 成 功 的 으 로 遂 行 되어 야 하 겠 고 또 그 령 게 되 도 록 關 係 機 關 및 全 會 員 의 積 極 的 인 協 助 가 要 望 된 을 國 民 의 한 사 람 으 로 이 方 面 에 從 事 하 는 會 員 의 한 사 람 으 로 懇 切 히 바 라 는 바 이 다.

다 만 本 調 査 에 서 의 診 斷 基 準 에 關 한 二 三 의 差 異 點 을 劃 一 的 으 로 하 지 못 한 데 對 하여 罪 責 感 을 느 끼 며 한 시 바 께 그 論 爭 點 을 解 消 시 켜 다음 기 회 에 報 告 드 리 고 저 한 다. 이 에 對 하여 — 가장 重 要 한 調 査 基 準 에 對 하여 明 白 한 文 書 條 文 을 無 視 하 고 適 當 히 해 두 자 던 가 盲 目 的 으 로 追 從 하 리 는 態 度 는 우리 의 앞 날 에 口 腔 保 健 事 業 의 앞 날 을 爲 해 서 도 徹 底 히 止 揚 되어 야 하 겠 다.

REFERENCES

- 1) 李正祐 : 口 腔 診 査 의 理 論 과 實 際
韓國齒科公論 第1卷 第4號(Sept), pp.17~24. 1965
- 2) 李正祐 : 女 大 生 의 口 腔 保 健 管 理 에 關 한 研 究 < 第 一 報 >
韓國生活科學研究院 論叢. 第二輯 2 : 83~102, 1969.
- 3) 鄭英鎭 : 比 推 定 과 그 標 本 誤 差 에 關 하여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第8輯 8 : 9~23, 1966.

- 4) 韓啓熙 : 李勝雨, 徐章錫, "K" 高 等 學 校 學 生 을 對 象 으 로 한 DMF 率 에 關 한 報 告. 大 韓 齒 科 醫 師 協 會 誌 9 : 131~6, 1971.
- 5) Antal, G.M. : Survey design and protocol for 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in Korea (Draft in type). 19 March, 1971.
- 6) Knutson, J.W. : Epidemiological trend patterns of dental caries prevalence data. J. Amer. Dent Ass 57 : 821-91958
- 7) Official and personal discussion with Dr. J. W. Knutson during his visit in May, 1971.
- 8) Personal communication with Dr. K.K. Wong.
- 9) Selected papers during the Training Course on Dental Epidemiological Methods in Singapore (WPRO-115). 1964.
- 10) WHO: Basic Oral Health Survey Methods. Geneva (WHO/DH/69.84). 1969.
- 11) WHO: Expert Committee on Dental Health Periodontal disease. Geneva (Wld Hlth Org. techn Rep. Ser. 207). 1961.
- 12) W.H.O: Expertsommittee on Dental Health: Standardization of Reporting of Dental Disease and Conditions. Geneva (Wld Hlth Org. techn Rep. Ser. 242). 1962.
- 13) WPRO/WHO: Report on the Training Course on Dental Epidemiological Methods for the Countries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Manila. (WPR/334/64). 1964.

齒 協 會 誌 寄 稿 案 內

投 稿 要 領

- ① 原稿磨勘日字 ; 每月 10日
- ② 보 낼 곳 ; 本 協 會 誌 刊 行 室
(서울 中 區 仁 峴 洞 1 街 31 의 8 號
現 代 醫 學 社 內 (26) 8398. 2257
- ③ 揭 載 料 內 容
平 版 ; 頁 當 1,400원
表 英 文 版 ; 頁 當 1,600원
圖 案 ; 枚 當 350원
銅 版 ; 坪 當 13원
(普通 寫 眞 1 枚 가 42 坪 임)
別 冊 ; 部 當 40원
(50 部 未 滿 은 50 원)

印 刷 ; 臺 當 2,500원

寫 眞 附 圖 1 面 12,000원

其 他 特 殊 印 刷 및 特 殊 組 版 을 要 할 시 는 그 察 費 를 寄 稿 者 가 負 擔 함.

④ 揭 載 順 序 및 月 號 는 學 術 委 員 會 에 서 決 定 함.

⑤ 寄 稿 時 는 아 래 事 項 을 明 示 마 람.

(가) 別 冊 所 要 日 字

(나) 別 冊 部 數

(다) 組 版 및 印 刷 上 特 히 注 意 를 要 하 는 事 項.

※ 其 他 學 會 誌 및 一 般 印 刷 問 議 는

現 代 醫 學 社 로 (26) 2257 8398